

아이돌봄지원사업 (마산권 · 진해권)

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26.

제 출 자 : 창 원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양육공백 발생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고자 함
- 나. 아이돌봄지원사업 마산권, 진해권 수행기관의 위탁 기간('24. 1. 1. ~ '26. 12. 31.)이 만료되어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6조제2항(의회 동의 및 보고)에 따라 재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적정성 검토 결과

가. 추진근거
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
-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6조제2항(의회 동의 및 보고)
-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제5장(연계 및 지원기관)

나. 적정성 검토 결과

- 맞벌이, 다자녀 등 양육공백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으로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필요
-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, 다양한 홍보 등 민간위탁 장점 활용 가능
- 민간기관 참여 서비스 질 향상 및 운영 전문성 강화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가능

3. 주요내용

가. 위 탁 기 간 : 3년('27. 1. 1. ~ '29. 12. 31.)

나. 위탁사무명 : 아이돌봄지원사업(마산권·진해권) 운영 및 관리

- 아이돌봄사 모집 및 채용 관리
- 서비스연계 및 안전관리
- 이용자 관리
-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
- 사업운영 관리
- 기타 지자체와 협의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

다. 위탁소요예산 : 10,003백만원 ※ '27년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가능
(국비 7,002^{70%}, 도비 900^{9%}, 시비 2,101^{21%})

라. 모집방법 : 공개모집

마.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·의결

4. 성과평가 결과

가. 평가개요

- 근 거 :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6조의2(성과평가)
- 평가내용 : 위탁사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평가항목	배점(100점)	평가내용
운영관리	40점	조직운영의 효율성, 재정관리의 적절성,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
사업성과	50점	주요 사업성과, 위탁시설 운영 실적 등
사후관리	10점	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, 자체평가 유무 등

나. 평가결과

- (마산권) 평가점수 : 93점

합계(100점)	운영관리(40점)	사업성과(50점)	사후관리(10점)
93점	35점	48점	10점

- (진해권) 평가점수 : 94점

합계(100점)	운영관리(40점)	사업성과(50점)	사후관리(10점)
94점	36점	48점	10점

다. 총평

- 인력운영, 재정관리, 이용자-아이돌봄사 간 서비스연계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음
- 마산권은 마산합포구, 마산회원구의 다양한 이용자 민원과 아이돌봄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진해권은 이용자와 아이돌봄사 간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

5. 향후 추진계획

-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: '26. 10.
- 접수기관 현장확인 : '26. 11.
-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'26. 11.
- 선정결과 통보 : '26. 11.
- 위·수탁 계약 체결 : '26. 12.

참고 1 서비스제공기관 현황

(단위:백만원, 명 /'26.7월 기준)

위탁기관	관할구역	위탁기간	예산	아동	종사자	돌봄사
계			17,548	1,874	17	653
경남행복한교육 사회적협동조합	마산권 (합포, 회원)	'24.01.01. ~ '26.12.31. (3년)	5,616	688	6	222
사회적협동조합 위드교육문화센터	진해권	'24.01.01. ~ '26.12.31. (3년)	4,387	416	5	167
창원손길 사회적협동조합	창원권 (의창, 성산)	'26.01.01. ~ '28.12.31. (3년)	7,545	770	6	264

참고 2 관련 법령

□ 아이돌봄 지원법

제11조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(이하 “서비스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, 인력,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,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

제7조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, 인력,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□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- 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**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하려면 창원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 5. 14., 2023. 8. 16.>
- ② 시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23. 8. 16.>
1.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
 2.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
-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의회의 동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 이 경우,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의 동의(제1항에 따른 동의를 포함한다)를 받은 날부터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23. 8. 16.>
-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8. 16.>
1. 청소, 경비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 2. 연간 위탁비용이 1억원 이하인 사무
- ⑤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3. 8. 16.>

□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제5장(연계 및 지원기관)

1.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재지정

- 가. 명 칭 : ○○시·군·구서비스제공기관(별칭은 ‘○○시·군·구아이돌봄센터’라 한다)
- 나. 지정권자 :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- 다. 지정대상 : 아이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
- 라. 지정대상 기관 수 :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, 서비스 대상 아동 수, 아이돌봄사 수, 대기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